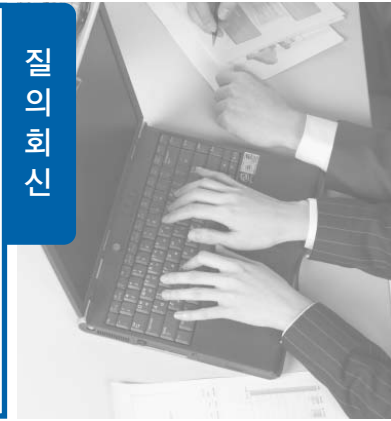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분야)

질의
회신



질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소하천1개소 연장 1.5km)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본 용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

질의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 소하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과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이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서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 그래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계획) 작성 시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 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의제 처리 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별단지를 포함한 단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단계로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조에 의해 실시하여 완료한 상태임. 단지내 개별단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개별단지를 포함한 대단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의 “같은 지역에서 별표 1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내용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써, 개발대상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방재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재해를 경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인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입지의 적정성 등 재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협의를 하며,

- 개발사업단계인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 당해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검토 및 협의를 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아님.

질의

행정계획으로 2003년에 141개소(198.32km)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득한 상태에서 금회 추가 및 변경으로 1개소 폐지, 4개소가 신규 추가 되어, 144개소이고, 변경 연장은 201.250km로 되었음.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계획 변경 시 면적의 30%이상 변경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 및 연장으로 볼 때 1~2%로 경미함. 다만 예전 계획수립 후 행정계획 사업지가 추가되었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에 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본 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임. 기존의 폐교 및 정수장을 개발하여 주민 복리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서 산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므로 근거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아닌 것 같으나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써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근거가 있는지?

답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현재 ○○시 일원에 위치한 “○○ ~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임.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의 계획 선형에 의해 흑산소하천에 대한 유로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금번 유로변경 시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과 더불어 해당 유로 변경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지방국토관리청과 ○○시 간에 해당 변경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해 주기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변경과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소하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변경내용

- 하천명 : 흑산천(소하천), 고시유로연장 : 770m
- 유로변경대상구간 : 200m, 유로변경구간 : 163m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답변

소하천정비법 제6조가 정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전, 제8조가 정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전에 각각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거나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 또는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를 보면 개발사업단계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 중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것만 있고, 지방2급이나 국가하천 시행계획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답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경우 개발사업단계인 하천정비시행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